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안성조은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시설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 2.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본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 ○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장기요양등급 변경, 요양수가의 변동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 및 변경(보완)계약서 서식을 사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 절차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축탁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2)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축탁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4)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

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 진료 수일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병원 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수급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 후송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후송병원을 선택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협력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호의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 의사가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결과를 얻도록 협력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119구급대에 우선 연락을 취한 후 대리인 또는 보호자 연락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④ 병원 후송 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소속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의 신병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4) 병원 외래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병원 외래나 의원의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129구급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차량 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